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5호 2013년 10월 pp.9~39
한국세무학회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

김광윤**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2013.2.1.자로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문헌연구적 방법으로 심층 분석을 한 것이다.

종래 중소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이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의 특례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존재해왔는데 차제에 적극적 접근법을 특징으로 하여 독립된 조문식 규정으로 제정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일반기준과의 차이 중 타당한 차이는 제외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향후 본 기준 개정시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무제표의 종류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상법과 함께 본 기준의 향후 개정시에 대차대조표는 모두 재무상태표로 대체해야 할 것이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자본변동표의 일부로서 흡수될 수 있는 정보이고 외국에서는 존치하지 않는 것이므로 향후 상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본 기준에서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배당안은 별도 부의안건으로 배당가능이익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둘째, 재무제표의 공시를 원칙적으로 비교식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단년식도 허용한다는 규정에서 단서를 삭제하여 비교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자비용 자본화의 적격자산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기준과 같도록 장기 채고자산, 유/무형 자산 외에 투자부동산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및 공사부담금과 관련하여 차감계정법 외에 정보가 매몰되는 직접차감법을 허용함으로써 혼선만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향후 개정시 단서를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채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세법을 많이 따라온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용이하도록 본 기준의 평균법을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나누어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상각후원가 측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이 이미 수년간 세법에 따라 단일 방법으로 적용해온 유효이자율법 관행에 혼선만 초래하는 것이므로 향후 기준 개정시 정액법 허용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아주대학교 2012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kimkyn@ajou.ac.kr, 031-219-2716

일곱째, 이자수익의 인식 시점에 대한 발생기준의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수년전 세법에서 단일 방법으로 도입한 유효이자율법 외에 정액법을 추가로 허용한 것은 공연히 실무에 혼선만 초래하므로 향후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현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는 배당가능이익을 알 수 없는바, 향후 중소기업회계기준 개정시 이를 폐지하여 자본변동표로 단일화함과 동시에 오히려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맞는 방식으로 배당가능이익계산내역을 주식 정보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소기업 회계처리기준의 변천내역에서 고찰된 바와 비교할 때 이번 기준에는 종래 일반 기준의 특례와 달리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스톡옵션이나 종업원지주제 도입시에는 오히려 복잡한 일반기준을 준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주요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나라/기구에서 보편화된 이연법인세회계(일명, 세효과회계)가 도입되지 못하고 당기세부담 회계(일명, 비기간배분회계)에 머문 것은 정보의 유용성 보다는 실무간편성에 너무 경도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상법, 중소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배당가능이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I. 서 론

2011.4.14. 공표된 개정 상법(발효는 1년간 유예 후 2012.4.15. 시행)에서는 종래의 회사의 계산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당시 입법예고한 개정 이유에 의하면 근래 기업회계기준이 국제적인 회계규범의 변화에 맞추어 꾸준히 변모하고 있으나 상법의 회계규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회계규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회계에 대하여 상법 및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는 원칙규정(상법 제446조의2)을 신설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하고, 또 재무제표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서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여 「상법」상 회계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를 기하게 함으로써 양자간 불일치가 해소되어 회계규범이 이원화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2.4.15. 제정 발표된 상법시행령(대통령령)은 제15조에서 회계원칙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15조(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상기 내용 중 시행령 제1호는 외부감사대상기업에 대한 것으로서 다시 주권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그 외 비상장외감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나누어지므로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체계는 “3층 구조(3-tier system)”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제3호에 따라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다.

드디어 2013년 2월 1일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관보(제2013-0029호, 법무실 상사법무과 소관)에 고시하였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약 1/10 분량에 총 56개조, 부칙 2개조 및 별지 서식(재무제표 양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발표된 보도자료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으로 회계업무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제공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방법에 의해 선행연구에 이어 중소기업의 회계현황을 일별한 후 중소기업 회계처리의 최종 산물인 재무제표의 내용(상법 제447조와 동 시행령 제16조)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조문별 쟁점사항을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포함)과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계속적으로 논쟁이슈가 되어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와 중소기업의 회계 실태

비상장기업 내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되는 선행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한진수·이점영(2004)의 연구는 비상장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비상장기업의 중소기업 특례조항들에 대한 이용실태, 특례조항이 없을 경우 중소기업 회계처리의 복잡성, 그리고 특례적용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계처리의 부담 완화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세비용에 관한 특례를 제외하고는 특례적용비용이 높지 않았으며, 주당순이익에 대한 특례조항의 경우 회계처리의 복잡성은 물론 회계처리의 부담완화에서도 공인회계사와 기업의 회계담당자 두 집단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은 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이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답하였다.

황인태 외(2009)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기초적 사항을 세 가지 연구주제로 하여 먼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도입배경과 기준제정의 추진방향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실태를 표본 조사하여 현행 기준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경위와 공개초안 시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정리하여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안은 주권상장법인만 IFRS를 적용하여 그 외는 비상장기준을 적용하자는 안이며,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은 IFRS의 적용을, 그 외는 비상장기준을 제시한 제2안,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은 IFRS의 적용하고 그 외는 비상장기준을 적용하되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는 제3안, 마지막으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그리고 대기업은 IFRS를 적용하고 그 외는 비상장기준을 적용하는 제4안을 제시하였다.

윤승준 외(2010)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이원화된 회계기준체제로 전체 응답자의 59.8%가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달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응답자 중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는 52.5%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번역하되 우리나라 실정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대체로 재무제표 작성자의 입장에서 쉽고 간편해야 하며,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신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관희 외(2011)는 중소기업 투명경영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하였다. 여기서는 비외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단순화된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분석, 해외사례연구, 중소기업·회계전문가·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율회계지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방안(준수확인방법, 인센티브 부여방안, 관련제도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저자들 중 허광복 등은 이 중 일부를 그 다음해 한국경영학회의 학술지(KBR)에 요약 게재하였다.

김광윤·심충진(2011)은 중소기업의 회계실태 분석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제·세정 개선방안 연구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14,260개를 기준으로 재량적 발생액,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의 차이(BTD), 유효법인세율, 조세회피 등의 분석을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과 비외감 중소기업 간의 비교를 통하여 회계투명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외감 중소기업에서 이익조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회계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급측면, 제공된 회계정보의 검토 및 검증 측면, 회계정보의 수요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 제시하였다.

허광복 외(2012)는 중소기업 경영 및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제언연구에서 비외감 중소기업을 상대로 회계 실태 및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적고, 회계보고서의 공시의 무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회계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미흡한 실정을 조사 확인하였으며 또 중소기업 자체의 회계처리 역량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세법 중심의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향후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긴요함을 역설하였다.

안경봉·허광복(2012)은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방향과 향후 과제 연구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대부분이 회계담당인력이 부족하며, 이들 기업에 의해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의해 병행처리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장 및 세무신고는 회사 스스로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공인회계사와 같은 회계전문가에 의해 외부 기장되거나 조정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비상장 외감기업을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쉽고 간편한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상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중소기업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내용으로 제정되기를 바라며, 제정 주체면에서 사회적 합의를 제고하도록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있는 참여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신언(2012)은 개정상법상 회사회계제도 관련규정 정비에 대한 보완과제 연구에서 상법 및 동 시행령 상 회계관련 규정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모두가 작성할 재무제표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자본변동표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면서(단,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의 경우는 현금흐름표와 주식을 추가로 요구) 회사의 회계 관련 별도 규정을 대폭 삭제함으로써 기업회계를 대부분 준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상법 본연의 목적이 이해관계자를 위한 적절한 회계정보의 공시 유도과 무분별한 이익배당 규제를 통해 채권자를 보호하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수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급변하는 국내외 자본시장에 부응하여 변화하는 외감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좇아 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강경진(2013)은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중점을 두고 간접적으로 중소기업 회계실무를 검토하였다. 상법 제462조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순자산액에서 차감할 미실현이익을 모든 자산과 부채의 평가이익(평가손실과의 상계없이 총액)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기순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을 모두 발라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하게 되어 비록 자본충실을 기하고 채권자보호를 도모한다는 대원칙하에 서라도 배당가능이익의 산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무상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상기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점은 최근 2013년 2월 1일 확정 고시된 법무부의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계기로 초창기인 만큼 실증연구 아닌 문헌연구방법으로 중소기업 회계처리기준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외국의 입법례를 일별한 후 회계기준의 주된 내용을 심층 검토하면서 일반 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 특례규정 포함)과 비교하여 잘잘못을 고찰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차후 개정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11년 말 법인통계를 보면 전체 회사의 총수 460,614개사 중 주식회사의 숫자가 437,346개사로 94.9%를 점하고 있고, 또 전체 회사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약 80.1%를 점하고 있어 그 비중이 막대하다. 이중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주식회사수는 19,576개사(주식회사 총수 중 4.5%)에 그치고 있어 외감법상 회계기준이 아닌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엄청나다(<표 1> 참조).

<표 1> 법인 통계와 중소기업 현황(2011년 말 현재)

		회사 수(개)	(%)
회사종류	주식회사	437,346	94.9
	유한회사	18,818	4.1
	합자회사	3,636	0.8
	합명회사	814	0.2
	계	460,614	100
회사규모	일반법인	91,514	19.9
	중소법인	369,100	80.1
	계	460,614	1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12.

* 참고-외부감사대상 법인(2011년 말 기준) : 19,576개사(상장법인 1,779개사 포함)¹⁾

한편 중소기업학회가 주관한 중소기업의 회계실태 설문조사결과(<표 2> 참조)에 의하면 회계 담당 인력은 자산규모 50억 원 미만인 기업의 과반수가 회계전담 인력이 없거나 1명 이하이어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작성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중복답변) 세무신고에 필요해서가 100%이고, 대출기관, 정부기관 그리고 거래처 제출용으로 작성하는 것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였다. 은행 등 대출기관의 신용대출 심사시 재무제표의 불신여부가 투명성 보장의 어려움을 74%가 호소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인은 ‘적용할 항목이 너무 많다’와 ‘세법과 차이 많다’를 들었으며, 개인 기업은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를 들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소규모 기업은 ‘이해용이성’과 ‘적용간편성’을 들고,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은 ‘세법과의 일관성’을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금융감독원, 외부감사제도 전국순회설명회 교재, 2013. 참조함.

〈표 2〉 중소기업 회계실태 설문조사결과(요약)

구 분	특 징
회계담당 인력	• 자산규모 50억 원 미만 기업의 과반수가 1명 이하
재무제표 작성 용도	• 세무신고용으로 100% 작성 • 대출기관, 정부기관, 거래처 제출용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상당수
신용대출심사시 재무제표 불신 이유	• 투명성 보장의 어려움 74%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	• 법인, ‘적용할 항목이 너무 많다’, ‘세법과 차이 많다’ • 개인 기업,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이 갖추어야 할 요소	• 소규모 기업, ‘이해용이성’과 ‘적용간편성’ •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세법과의 일관성’

(자료)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 공청회 자료, 2011.9.와 한국회계기준원,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공개초안 공청회 자료, 2012.7. 참조

그리고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시 특히 취약한 계정 항목을 설문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등으로 나타났다.

〈표 3〉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시 특히 취약한 계정 항목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시 특히 취약한 계정 항목	평균비중(%)	응답수(개)
㉠ 매출액	6.8	339
㉡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28.6	
㉢ 매출원가	33.3	
㉣ 매입채무	11.2	
㉤ 가지급금과 가수금	21.2	
㉥ 인건비	10.6	
㉦ 퇴직금	10.0	
㉧ 감가상각비	36.0	
㉨ 4대 보험(복리후생비)	12.1	
㉩ 무형자산	17.1	
㉪ 기타	0.3	
총 계	100.0	

(자료) 유관희 외, 2011. 『중소기업 투명경영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 연구보고서. 한국중소기업학회. 22쪽.

Ⅲ. 중소기업 회계처리 기준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회계처리기준에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최초로 언급한 것은 1996.3.30. 7차 개정된 기업회계기준(구 증권관리위원회, 현 증권선물위원회 제정) 제93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였다. 동 기준은 그 전의 1958년 제정된 기업회계원칙 및 재무제표규칙과 1974년 제정된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및 「상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1981.12.23. 제정된 회계기준이 모태였다. 그 후 1997년 하반기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의 권고로 회계기준 제정작업이 정부보다 중립적인 민간기구로 넘어가게 되어 임무를 승계 받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당시 한국회계연구원, 현재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설치)가 1998.4.1. 제정한 구 기업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로 이어졌다. 이어서 동 규정은 종래의 조문식에서 대폭 개혁하여 외국처럼 문장식(statement format)으로 바뀐 기업회계기준서의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2003.12.23.)로 발전하였으며, 최근 2007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K-IFRS)의 전격 도입을 계기로 2009.11.27. 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31장으로 준치되어 왔다.

위 네 차례 특례 중 이번 2013.2.1.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비교대상이 되는 최신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10개항이다.²⁾

- “1.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2.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한다.
3.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한다.
4.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5.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예: 주식

2) 한편,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두 기준간 차이가 있어 비교기준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즉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특례규정은 외감대상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비하여, 본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외부감사 대상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의 특례규정 31.3에 의하면 “이 장은 외감법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양 기준간에 적용범위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선택권이 부여된 경우)되거나 발행(예 : 주식이 부여된 경우)되기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여한 주식선택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신주의 액면금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거래 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제19장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복합금융상품 중 부채요소만을 인식할 수 있으며 부채요소는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6.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8.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이익을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9.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0.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결) 상기 4종의 특례규정의 특징은 예외 인정이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모두 소극적 접근법(negative approach)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준을 전부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이번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적극적 접근법(positive approach)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만을 독립된 조문식 규정으로 제정하여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여준 특징을 가진다. 다만, 이번 기준에는 종래 일반기준의 특례와 달리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아예 누락되어 스톡옵션이나 종업원지주제 도입시에는 오히려 복잡한 일반기준을 준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IV. 외국의 입법례

살펴 볼 외국 중 미국은 모범회사법(MBCA)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독일, 영국, 일본,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1. 독 일

독일은 상법(Handelsgesetzbuch : HGB)에서 회계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최근 독일회계 기준위원회가 회계기준을 개발하고 이 기준을 연방법무부(the Federal Ministry of Justice)에서 공표하여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등에 일부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Local GAAP).

2009년 3월 독일 의회는 ‘독일 회계법현대화법’(The German Accounting Law Modernization Act, BilMoG)을 의결하였는데, 이 법은 1985년 독일회계법 입법 이래로 가장 대규모의 개정으로, 복잡하고 광범위한 IFRS를 대신하여 비용 효율적이고 단순화된 지침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용 시기는 2009년 12월 31일 후의 회계연도부터 하되 2008년 12월 31일 후의 회계연도부터 조기 적용을 허용하였다.

회계기준상 주요 특징은 고정자산의 경우 원가모형 중심이며 이연법인세와 확정급여채무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작성해야할 재무제표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석을 요구하고 있다.

2. 영 국

영국의 소기업재무보고기준(Financial Reporting Standard for Smaller Entities, FRS-SE)은 1997년 ASB(회계기준위원회)가 위촉한 소기업회계기준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for Smaller Entities)가 개발하여 공표한 회계기준이다.

전체적으로 영국의 재무보고기준(FRS)은 Tier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 Tier 1 : Publicly accountable entities(상장기업)에 IFRS를 적용(공기업, 은행, 보험회사 및 일부 중소기업 포함)
- Tier 2 : Non-publicly accountable entities(비상장기업)에 중소기업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for SME)을 적용
- Tier 3 : Small companies(소기업)에 FRS-SE를 적용하는 3층 구조이다.

2012.1.30. ASB는 ‘영국의 재무보고의 미래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FRS, SSAPs, UITF를 단일의 FRS로 대체한다.
 - IFRS for SMEs에 기초하되 회사법 등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 특정 기업은 IFRS의 인식·측정 기준에 감소된 공시 규정을 적용한다.
- FRS-SE는 유지하되 EC의 제안에 따라 소기업과 초소기업에 대한 재무보고 관련 기준을 향후 좀 더 검토하기로 한다.

회계기준상 주요 특징은 고정자산의 경우 재평가를 공정가치로 허용하며 이연법인세 인식과 리스회계를 요구하고 보험수리적 평가에 의한 확정급여채무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제표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식을 요구하고 있다.

3. 일 본

일본의 경우 2005.8.1.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일본공인회계사협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을 제정 공표하였다.

-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을 제외한 주식회사로 한다.
 - ①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 또는 그 자회사 및 관련 회사
 - ② 회계감사인을 설치한 회사 및 그 자회사
- 특례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도 본 지침에 따르는 것을 권장한다.

최근 중소기업 회계에 관한 검토회가 상공인·금융 관련 단체, 교수,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 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사무국-중소기업청, 금융청; 옵서버-법무성) 2012년 2월에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기본 요령”을 발표하였다.

회계기준상 주요 특징은 고정자산의 경우 원가모형을 중심으로 하되 세효과회계(이연법인세 회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자본등변동계산서, 개별주기표(주식)를 요구하고 있다.

4.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오늘날 글로벌 회계의 주류를 점하고 있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을 제정 발표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수년간의 필요성 조사와 토의를 거쳐 2009년 7월 중소기업용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약칭 IFRS for SMEs)을 공표하였다.

회계기준상 특징은 기존의 방대한 IFRS를 간소화한 것이나, 분량이 230쪽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며, 재평가를 공정가치로 허용하고 이연법인세인식과 퇴직연금회계, 자산손상, 리스회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작성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기본재무제표는 공개기업과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와 주식의 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 참조).

〈표 4〉 외국 입법례 - 중소기업회계기준(요약)

	독 일	영 국	일 본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중소기업회계 기준/지침	상법(HGB) - 일부 간소화 (2009)	소기업 재무보고기 준(1997)	중소기업회계지침 (2005) 중소기업회계기본 요령(2012)	중소기업 국제재무 보고기준(IFRS for SMEs)(2009)
제정주체	연방 법무부	영국회계기준위원 회(ASB)	일본회계기준위원회 (ASBJ), 세리사회연 합회, 공인회계사협회와 상공회의소 공동	IASB
주요특징	원가모형 중심, 이연법인세와 확정급여채무인식	재평가를 허용, 이연법인세 인식, 리스회계, 확정급여채무 인식	원가모형 중심, 자산손상, 세효과회계	재평가를 허용, 이연법인세회계, 퇴직연금회계, 자산 손상, 리스회계(230쪽)
재무제표 종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주식	대차대조표 포괄손익계산서 - 주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자본등변동계산서 개별주기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주식

(소결) 상기 외국입법례에서 공통되는 관찰사항은 모든 기준에 걸쳐 재무제표 중에 주식이 포함되고, 주요 내용상 특징으로 이연법인세회계(일명, 세효과회계)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V. 중소기업회계기준의 항목별 비교 분석

아래에서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본 기준”이라 함)과 종래 중소기업이 사용해온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함)³⁾ 간 차이를 집중 분석하면서 타당한 내용과 향후 개선이 필요한 내용으로 2대별하고 후자의 경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3) 본 기준 제3조(회계정책의 선택) 단서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1. 타당한 내용

가. 자본의 구분 규정

본 기준 제6조 제5항 제3호는 자본의 구분표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과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위 조항은 일반기준의 자본 5구분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없애고 4구분한 것으로서, 자산과 부채를 원가모형 중심으로 간편화한 마당에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과 같은 기타포괄손익항목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당연한 조치이다.

나. 회계정책의 변경 규정의 비교

본 기준 제43조 제5항은 회계정책의 변경 등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⑤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되도록 한다.”

위 조항은 일반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예,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 변경)은 소급법(단, 누적효과 결정이 곤란한 경우는 전진법)으로, 회계추정의 변경(예,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각각 구분하는 회계처리하는 것을 모두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한다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회계 간편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이다.

다. 오류 수정의 회계처리 규정의 비교

본 기준 제44조 제2항은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에 영업외손익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위 조항은 일반기준에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일 경우 소급법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되, 그 밖의 오류는 당기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한데 비하여 기준에서는 모든 오류의 수정을 당기법에 따라 영업외손익에 전기오류수정손익 과목으로 반영하도록 한 것인바, 이는 중소기업의 회계 간편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이다.

라. 유·무형자산의 후속 평가 규정의 비교

본 기준 제38조 제4항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후속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④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유형자산 :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무형자산 :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위 규정은 일반기준에서 유·무형자산의 후속평가를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 가능하게 한데 비하여 기준은 원가모형만을 따르도록 한 것인데, 이는 재평가의 자의성과 해당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회계 간편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이다.

마.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규정

본 기준 제38조 제8항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⑧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다만,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1. 유형자산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2. 무형자산 :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위 규정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 일반기준에서 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행태를 반영하는 합리적 방법(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중 선택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기준은 유형자산의 경우 3종, 무형자산의 경우 2종 중에서 선택(단, 영업권은 정액법만 인정)하도록 다소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 기준이 종래 세법을 따라온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혼선을 주지 않도록 세법대로 규정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다.

바. 사업결합 취득일의 자산·부채 측정 규정

본 기준 제51조 제1항은 사업결합 취득일의 자산부채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취득일에 별도로 식별되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1.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피취득자의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2.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 규정은 일반기준에서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장부금액 측정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회계실무 능력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이다.

사. 영업권과 염가매수차익의 상각/환입 규정

본 기준 제38조 제7항 및 제51조 제3항은 영업권과 염가매수차익의 상각/환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8조⑦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51조③ 이전대가가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를 염가매수차익으로 하여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4조의2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들 규정은 일반기준에서 영업권은 내용연수(20년 이내)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염가매수차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데 비하여, 본 기준은 이러한 원칙 외에 법인세법에 따라 5년간 균등 상각/환입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게 세법을 따를 수 있는 간편성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규정이다.

아. 손상차손의 측정 규정

본 기준 제36조 제3항은 손상차손의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③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장부금액보다 중요하게 낮으면 장부금액을 순공정가치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위 규정은 일반기준에서 손상차손을 “장부금액－회수가능액”으로 측정하는데 비하여 본 기준은 “장부금액－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계이론상으로 회수가능액(recoverable amount)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이므로 손상차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가치(해당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액)를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본 기준은 일반기준과 달리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순공정가치(=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만으로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바, 중소기업의 실무적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서 바람직하다.

자. 금융상품의 최초측정과 평가 규정

본 기준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과 제41조 제1항은 금융상품의 최초측정과 평가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6조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제40조① 제3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하 ‘매출채권 등’이라 한다)은 현재가치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①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등(이하 ‘매입채무 등’이라 한다)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최초에 측정한다. 다만, 현재가치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이들 규정은 일반기준이 금융상품의 최초측정을 공정가치(거래가격, 단 장기거래분은 현재가치)로 하는데 비하여, 본 기준은 자산의 경우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부채는 부담 채무액으로 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기말 평가를 일반기준은 공정가치(지분증권) 또는 상각후원가(채무증권)로 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데 비하여, 본 기준은 현재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임의성과 중소기업의 회계실무 능력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이다.

차.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손익 처리 규정

본 기준 제39조 제2항 내지 제3항과 제5항 내지 제6항은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손익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9조②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손익은 단기투자자산평가손익 등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말한다. 다만,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온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으면 그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 출자금 등의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⑤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손상차손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이들 규정은 일반기준이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3분류한 뒤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때 발생한 평가손익은 각각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며, 추후 공정가치나 회수가능액 변동시 모든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과 동 환입을 인식하는데 비하여, 본 기준은 유가증권을 2분류(단기투

자자산, 장기투자증권)하고, 단순히 시장가격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평가손익은 모두 당기손익(단기투자자산평가손익)에 반영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은 원가법(채무증권은 상각후원가법)으로 평가하며, 후자의 경우 손상차손과 추후 환입을 인식하도록 규정하여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중소기업의 회계간편화 조치로서 실무적용성을 높이는 방향인바 바람직하다 하겠다.

카. 매출채권 등의 양도 규정

본 기준 제8조는 매출채권 등의 양도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매출채권, 대여금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은 매출채권처분손익 등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위 규정은 매출채권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일반기준이 3개 요건(소유권행사, 처분권, 효율적 통제권) 충족여부에 따라 매각거래와 담보차입거래로 구별하는데 비하여, 본 기준은 구별 없이 모두 매각거래로 보도록 단순화하였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당기손익(매출채권처분손익 과목)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것은 중소기업의 회계능력을 고려한 조치로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타. 재화 판매와 용역 제공의 수익 인식 규정

본 기준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은 재화 판매와 용역 제공의 수익 인식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회수기간이 1년 이상인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② 용역 제공과 건설형 공사계약의 경우, 진행률과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하여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아 진행률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거나 공사 또는 제작이 진행되는 회계연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1년 내에 완료·완성되는 용역 및 건설형 공사계약은 각각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과 공사 또는 제작을 완성한 날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들 규정은 재화 판매와 용역 제공의 수익인식에 대하여 일반기준이 전자는 5개 조건(소유 위험·보상의 이전, 통제권의 상실, 수익금액의 측정 가능성, 경제적 효익의 매우 높은 유입가능성, 관련 원가의 측정가능성) 아래 인도기준(delivery basis)에 따르고, 후자는 4개 조건(진행률의 측정가능성, 수익금액의 측정 가능, 경제적 효익의 매우 높은 유입가능성, 관련 원가의 측정가능성) 아래 진행기준(percentage-of-completion basis)을 따르는데 비하여, 본 기준은 수익인식 조건을 단순화하여 재화 판매 또는 용역제공 후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 인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는 용역 제공과 건설형 공사계약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다만, 각각에 예외를 두어 전자의 경우 장기할부판매는 할부금회수기일에 수익 인식하는 할부기준을 인정하고, 후자의 경우 단기의 용역 및 건설형 공사계약은 완성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중소기업 회계현실을 고려한 간소화 조치로서 타당하다 하겠다.

2. 향후 개선이 필요한 내용

가. 재무제표의 종류

개정 상법과 동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재무제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한편 상법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① 법 제44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식(註釋)을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위 법령체계에 따라 본 기준 제4조 제1항은 재무제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상술한 내용에 입각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기준은 가장 최신 기준이면서도 종래의 일반기준에 비하여 재무상태표를 구 용어인 대차대조표로 고집함으로써 발전된 회계이론을 따르지 못하게 하여 구태로 비치고 있다. 이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법에서도 이미 수년 전에 바뀐 것이므로 기업일반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상위법인 상법의 향후 개정시에 대차대조표는 모두 재무상태표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자본변동표와 선택적인 기본 재무제표로 들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자본변동표의 일부로서 흡수될 수 있는 정보이며, 또 일반기준에서 주식의 하나로 하위규정한데서 보듯이 외국에서는 존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 상법에서 굳이 유물로 고집한데 기인한 것이므로⁴⁾ 향후 상법시행령 개정시에 삭제함으로써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세법도 같은 추세를 따를 것이다. 다만, 배당안은 별도 주총 부의안건으로 다음 장의 배당가능이익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그림 1〉 재무제표의 체계 비교



*1) (상법447, 시행령16)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경우 현금흐름표와 주식을 포함 - 총 5종

*2) (법인세법60) 외감법인의 경우 현금흐름표를 추가해야 함 - 총 4종

(자료) 김광윤,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안)의 주요내용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2.11.

나. 비교정보 공시 규정

본 기준 제4조 제2항은 재무제표의 작성 공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분과 해당 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분만 작성할 수 있다.”

위 규정은 재무제표의 공시를 원칙적으로 비교식(comparative form)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단년식(single year form)도 허용한다는 것인데, 기준의 제정시 작성자인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역사는 다음 장을 참조.

주지 않도록 한다는 간편성 배려로 보이나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특히 세무당국이나 대출기관 등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비교 정보를 제공하여 유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보더라도 다음의 기준 개정시에는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이자비용의 회계처리와 자본화 적격자산 규정

본 기준 제37조 제3항과 제38조 제2항은 장기채고자산과 유/무형자산의 취득 용 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와 적격대상 자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7조 ③ 취득이 시작된 날부터 의도한 용도로 사용·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채고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를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제38조 ②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들 규정은 자산 취득용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원칙적으로 비용설로 처리하되, 자산설도 예외로 허용한다는 일반기준과 취지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일반기준에서는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 모두의 이자비용을 자본화 시키는데 비해 기준에서는 세법에 따라 특정차입금분 이자는 자본화를 강제하되 일반차입금분 이자는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자본화 대상 적격자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기준은 투자부동산도 포함시키지만 기준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는 종래 세법을 따라온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혼선을 주지 않도록 세법의 방식대로 규정한 것으로서 좋으나, 후자는 그 대상 적격자산을 일반기준과 같도록 투자부동산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규정

본 기준 제50조 제2항과 같은 조 제4항은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및 공사부담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비화폐성자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 :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받은 자산(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취득한 다른 자산을 포함한다)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2.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및 이후 :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

할 때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④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들 규정은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을 해당 자산 취득 시점 이후에는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차감계정법만을 인정하는 일반기준과 다른 것으로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당초의 취득금액 정보를 알 수 없게 하며, 또한 세법에서도 종래의 압축기장법을 배제하고 취득가액을 유지하면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토록 해온 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가 매몰되는 직접차감법을 허용함으로써 혼선만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향후 개정시 단서를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마.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매출원가) 결정방법 규정

본 기준 제37조 제5항은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7조 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위 규정은 일반기준의 단위원가결정방법과 유사하나 동 기준의 가중평균법을 평균법으로 표현한 점에 차이가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향후 기준 개정시에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반기준에서도 실무지침7.10에서 가중평균법을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구분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둘째 세법에서는 일찍이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을 각각 열거하고 있는바, 세법을 많이 따라온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용이하도록 평균법을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나누어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상각후원가 측정 규정

본 기준 제39조 제4항, 제40조 제2항과 제41조 제2항은 상각후원가(amortized cost) 측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9조 ④ 시장가격이 없는 국채·공채, 회사채 등의 채무증권은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반영한다.

제40조 ② 매출채권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반영한다.

제41조 ② 매입채무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에 반영한다.”

이들 규정은 일반기준에서 상각후원가법 적용과 사채발행차금 상각/환입시 유효이자율법만 인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정액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간편성 도모의 실익보다는 이론적으로 우수하고 중소기업들이 이미 수년간 세법에 따라 이론상 합리적이라고 보아 단일 방법으로 적용해온 유효이자율법 관행에 혼선만 초래하는 것이므로 향후 기준 개정시 정액법 허용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 이자·배당금 수익 인식 규정

본 기준 제24조 제3항은 이자·배당금의 수익 인식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③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각 회계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실제로 현금을 받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1. 이자수익 :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2. 배당금수익 :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위 규정은 일반기준이 이자수익의 인식시점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발생기준을 따르고 배당금수익에 대하여 일반적인 발생기준을 따르는데 비하여, 본 기준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이자수익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 외에 정액법에 의한 발생기준도 허용하며, 둘째, 이자와 배당금 수익 모두에 대하여 중요성이 없는 경우 현금기준을 인정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중 후자는 좋으나, 전자(이자수익의 인식 시점)의 경우 수년전 세법에서 이론상 합리적이라고 보아 단일 방법으로 도입한 유효이자율법 외에 정액법을 추가로 허용한 것은 실무에 혼선만 초래하므로 향후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VI.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검토

상법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르면 상법 제447조 제1항 제3호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자본변동표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⁵⁾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말현재의 자본변동표와 차기 주총일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준

5)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서류 모두와 현금흐름표 및 주식(註釋)을 말한다.

시점도 다르고 포함되는 정보의 범위도 다르므로 선택사항으로 할 바가 아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3조에 의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에정사항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로서, 그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1.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임의적립금 등을 이입하여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가. 이익준비금
 - 나. 기타법정적립금
 - 다.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등 :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자기주식처분손실잔액 등으로 구분한다.
 - 라. 배당금 : 당기에 처분할 배당액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마. 임의적립금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의 합계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상술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1962년 구 상법 제정시에 주식회사의 계산서류 중 하나로서 1945년 11월 12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조선민사령』과 일본의 민사법(의용상법)을 준용하여⁷⁾ 「준비금과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한 의안」 명칭으로 요구된 서식인데, 그 내용이 자본 항목 중 이익잉여금의 처분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회계이론의 발달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의용상법의 진원인 일본도 이를 없애고 주주자본등변동계산서(우리의 자본변동표에 해당)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변동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본기준 제52조).

- 6) 한편 이익잉여금이 음수로 되는 경우에는 이를 결손금이라고 바꾸어 표현하며 이 경우 필수적 선택으로 동 기준 제54조에 따라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로서, 그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미처리결손금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결손금처리액 : 임의적립금이입액,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이익준비금이입액, 자본잉여금이입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미처리결손금에서 결손금처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7) 김은기, 신회사법 이론과 실무, (주)영화조세통람, 2012, 16쪽.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의 각 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기초 잔액, 변동사항과 기말 잔액을 표시한다.

1. 자본금의 변동 :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와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자본잉여금의 변동 :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결손금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자본조정액의 변동 : 자기주식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자본조정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이익잉여금의 변동 : 연차배당(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한다), 중간배당, 그 밖의 전기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즉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이익잉여금의 변동/처분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무용론이 수년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⁸⁾ 다만, 자본변동표의 작성시점이 기말현재로 본 과거의 것이라는 점이 이익잉여금의 미래 처분안과 다소 상이하고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배당가능이익 정보 차원에서 여전히 유용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경영현실과 2011.4.11. 개정 상법의 결산승인 이사회 결의제도 도입 등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실무를 고려하면 이것은 실무계에 부담만 주는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오히려 배당가능이익정보 제공이라는 유용성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현행 상법에서 배당가능이익 관련 규정으로는 상법 제462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9조가 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8) 일반기준에서는 상법의 규정을 의식하여 기본재무제표 아닌 주석 중 하나로 작성·제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상법시행령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에서는 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

위 규정들에 의할 때 위법배당에 대하여 반환청구권¹⁰⁾까지 둔 상법으로서는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정보가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가늠할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에 관한 상법의 태도는 순자산액, 즉 “자산-부채”인 자본총계에서 시작하여 자본금, 기말 법정준비금, 미래 이익준비금과 미실현평가이익(미실현평가손실 차감전)¹¹⁾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어 순자산 접근법(net assets approach)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대차대조표의 전체에 걸쳐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평가로 인한 평가이익을 하나씩 발라내어 순자산액(자본)을 결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반면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내용은 이익잉여금접근법(retained earnings approach)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시작하는바,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가감한 금액으로 구성되므로 당기분 미실현평가이익만 발라내어 제거한 것과는 불일치하여 완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결국 현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는 배당 예정액만 제시하고 있고 배당가능이익을 알 수 없는바, 향후 상법시행령 제16조와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폐지하여 자본변동표로 단일화하고 오히려 상법의 규정에 맞는 방식으로 배당가능이익계산내역을 주석 정보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¹²⁾ 물론 배당예정액은 별도의 주주총회 심의안건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배당가능이익 정보와 함께 제시되면 위법배당여부에 대한 상법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 9) 한편 경과조치로서 회사가 이 시행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순자산액에 반영한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미실현이익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실현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영 부칙 제6조).
 - 10) 심영(2012, 83)에 의하면 회사채권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반환)에 근거하여 해당 주주에게 부당이득으로 인한 위법배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안수현(2013, 34)도 같은
 - 11) 미실현평가손실을 미실현평가이익과 상계하지 않으므로 논리적 일관성이 없고 배당가능이익을 지나치게 적게 산출하는 비합리적인 측면도 있다.
 - 12) 나아가 강경진(2013, 247)은 실무 적용상 어려움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사태에 입각한 계산례를 제시하고 지나친 분배가능액 규제의 폐해를 제시하고 있다. 김광운(2013, 50)도 같은.

VII.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2013.2.1.자로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문헌연구적 방법으로 심층 분석을 한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과 회계실태를 일별하고, 중소기업 회계처리 기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그리고 주요 외국의 중소기업회계기준 입법례도 고찰하였다. 이어서 이번에 고시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주요항목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의미를 배당가능이익정보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차제에 적극적 접근법을 특징으로 하여 독립된 조문식 규정으로 제정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교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일반기준과의 차이 중 타당한 차이는 제외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향후 본 기준 개정시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무제표의 종류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상법과 함께 본 기준의 향후 개정시에 대차대조표는 모두 재무상태표로 대치해야 할 것이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자본변동표의 일부로서 흡수될 수 있는 정보이고 외국에서는 존치하지 않는 것이므로 향후 상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본 기준에서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배당안은 별도 주총 부의안건으로 아래 여덟째의 배당가능이익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둘째, 재무제표의 공시를 원칙적으로 비교식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단년식도 허용한다는 규정에서 단서를 삭제하여 비교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자비용 자본화의 적격자산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기준과 같도록 장기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외에 투자부동산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자산 관련 정보보조금 및 공사부담금과 관련하여 차감계정법 외에 정보가 매몰되는 직접차감법을 허용함으로써 혼선만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향후 개정시 단서를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세법을 많이 따라온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용이하도록 본 기준의 평균법을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나누어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상각후원가 측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이 이미 수년간 세법에 따라 단일 방법으로 적용해온 유효이자율법 관행에 혼선만 초래하는 것이므로 향후 기준 개정시 정액법 허용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이자수익의 인식 시점에 대한 발생기준의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수년전 세법에서 단일 방법으로 도입한 유효이자율법 외에 정액법을 추가로 허용한 것은 공연히 실무에 혼선만 초래하므로 향후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현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는 배당가능이익을 알 수 없는바, 향후 중소기업회계

기준에서 이를 폐지하여 자본변동표로 단일화함과 동시에 오히려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맞는 방식으로 배당가능이익계산내역을 주식 정보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소기업 회계처리기준의 변천내역에서 고찰된 바와 비교할 때 이번 기준에는 종래 일반기준의 특례와 달리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스톡옵션이나 종업원지주제 도입시에는 오히려 복잡한 일반기준을 준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주요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나라/기구에서 보편화된 이연법인세회계(일명, 세효과회계)가 도입되지 못하고 당기세부담회계(일명, 비기간배분회계)에 머문 것은 정보의 유용성 보다는 실무간편성에 너무 경도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뜨거운 공청회 및 학회의 토론과 법무부 산하 회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고시된 기준을 대상으로 시급한 문헌분석에만 그친 것이다. 향후 상기 개선방안 외에도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본격 시행한 뒤에 실증 고찰을 거쳐 보다 발전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진. 2013.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관한 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2호 : 222-249.
- 금융감독원. 2013. 외부감사제도 전국순회설명회 교재.
- 김광운. 2012.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안)의 주요내용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69-83.
- 김광운. 2013.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실무상 이슈와 개선방안”.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43-70.
- 김광운·심충진. 2011. 『중소기업의 회계실태 분석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제·세정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공인회계사회.
- 김신언. 2012. “개정상법상 회사회계제도 관련규정 정비에 대한 보완과제”. 계간 세무사. 가을호 : 70-89.
- 김은기. 2012. 『신회사법 이론과 실무』. (주)영화조세통합.
- 대한민국(국회 및 법무부). 2012. 상법 및 상법시행령.
- 법무부. 2013.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2013-0029호.
- 법무부. 2012. 중소기업회계기준안 공청회 자료.
- 심 영. 2012. 『주식회사의 회계제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회사 실무총서 VI-1.
- 안경봉·허광복. 2012.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방향과 향후과제”. 한국상사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 37-68.
- 안수현. 2013.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 해설”.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5-40.
- 유관희·허광복·박희우·박성중·안경봉·나현근·최종명. 2011. 『중소기업 투명경영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 연구보고서. 한국중소기업학회.
- 윤승준·박종일·정영기·최 관. 2010.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설문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 9-44.
- 정동윤(감수). 2012. 『상법 회사편 해설』. 상법해설서 시리즈 II, 법무부.
- 최준선. 2011. 『개정상법 회사편 해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협 실무전집 43.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1.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 공청회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2012. 중소기업회계기준 및 지침-일반기준과 해외기준의 비교. 중소기업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2012.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공개초안 공청회 자료.
- 한진수·이점영. 2004.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회계실태와 회계제도 개선방안-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실태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 259-288.

- 허광복·박희우·유관희. 2012. “중소기업 경영 및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제언”. KBR. 제16권 제1호 : 35-50.
- 황인태·최종서·강선민. 2009. IFRS 도입에 따른 비상장기업회계기준 제정방향 : 중소기업 특례 규정 분석을 통하여. 회계저널. 제18권 제1호 : 1-34.

An Analytical Review of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n the Commercial Act*

Kwang-yoon Kim**

—〈Abstract〉—

The paper aims to analyze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hereafter, the Standard) in the Commercial Act 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s of February 1, 2013 through archival study methodology. At first, the statu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nd their current state of accounting practice are reviewed.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n Korea is also traced. Moreover,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are analyzed via case study. From then on, recently announced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s scrutinized in respect of individual items. In addition,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is reviewed critically relating to the information on distributable income.

In this regard,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 stand-alone clause-type regulation characterizing positive approach, is thoroughly analyzed comparing with the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in terms of individual items. The analysis results in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coming revision of the Standards, accepting the reasonable differences from the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Such items are as follows.

- class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reporting type of financial statements
- object of capitalizing borrowing costs
- government grants and construction gifts
- inventory costing of units
- measurement of amortized cost
- recognition timing of interest income
-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 The paper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Ajou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jou University, kimkyn@ajou.ac.kr, 031-219-2716

Finally, accounting for share-based compensation and deferred income tax should be stipulated additionally for the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in the next amendment of the Standards, including the Commercial Act & its Decree.

〈Key words〉 Commercial Act, Accounting Standard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Distributable Incom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